

#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4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  
(총 무 과)

## 1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토록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근거법령

-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

## 3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토록 함. (안 제2조 제3호)

## 4. 개정(안) : 붙임1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##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)중 제3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권한의 위임)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 1~2(생략) 3.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4. (생략)	제2조(권한의 위임) ..... ..... ..... 1~2(현행과 같음) <삭제> 4. (현행과 같음)